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안 번호	2649
----------	------

제출년월일 : 2015. 5. 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에 대하여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 가. 사망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 나. 실종자 및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 · 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감면 추계액 : 88,518천원(내역붙임)
-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지방세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세월호 사고 희생자 지방세 감면 연장계획 1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정(안)

의안 번호	2649
----------	------

제출년월일 : 2015. 5. 1.
제출자 : 안산시장

□ 수정이유

- 원(안)에 본문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 가. 사망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 나. 실종자 및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 · 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
인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감면방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안산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을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 대상자(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 가. 사망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 나. 실종자 및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 · 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2.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3. 감면방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신 설></p>	<p>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p>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안산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을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면 대상자(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나. 실종자 및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 사실상 보호자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 · 실종자 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2. 감면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세 소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

인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3. 감면방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
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환급하고 의결 후에 신
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
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